

의안번호	2203210
의 퇴 인	한정애의원
회 답 일	2024.9.30.
추계번호	24D318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¹⁾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0조의3 (피치료감호자 자녀지원의 특 례)신설	피치료감호자의 미성년 자녀 중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서 부 또는 모가 피치료감호자인 경우(부모 모두인 경우를 포함한다), 부모가 아닌 친족이 양육하는 경우에 그 양육자가 피치료감호자인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2조·제53조 및 제53조의2 ²⁾ , (안)제53조의3, (안)제53조의4를 준용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
- 1) 이 법률안은 한정예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접견) ①~②(생략)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중전 제3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9.4.23.>
1.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⑥(생략)
- 제52조(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중이거나 출산(유산·사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소장은 수용자가 출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3조(유아의 양육) ①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1. 유아가 질병·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수용자가 질병·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때
-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필요한 설비와 물품의 제공, 그 밖에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3조의2(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① 소장은 신입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② 소장은 수용자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안내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의뢰 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0조의3 (피치료감호자자 녀 지원의 특례)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자녀 양육 등 지원(안 제50조의3 신설)

- 개정안에 따라 피치료감호자 자녀 지원 특례로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2조 등을 준용하여 임신부인 수용자에 대한 정기검진,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유아 양육,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등을 실시하는 경우, 임신부 정기검진, 유아 양육을 위한 설비, 물품 지원 등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다만, 피치료감호자 중 임신부 검진 대상자 수 및 평균 검진 비용, 유아 양육 신청자 수, 유아 양육 설비 설치 수량 및 물품 제공 수량, 설비 및 물품별 평균 비용, 미성년 자녀 지원 의뢰 건수 및 평균 지원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 참고로, 2023년 기준 치료감호시설의 평균 수용인원은 814명이고 심신장애, 약물중독 등에 대한 특수치료 및 재활교육, 병동시설 유지관리, 피복비, 급량비 등으로 115억 2,100만원(결산기준) 집행하였고 2024년 예산 기준으로는 126억 8,000만원 편성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강아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아름	02-6788-4664	krm7839@nabo.go.kr